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일 시 : 2019. 8. 29.(목) 10:00
- 장 소 :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기후환경본부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 계획을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 재계약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 위 치 :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용답동 250-14외 5필지 중량물재생센터 내)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6,530 m^2
- 위탁사무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기관 : 서울디자인재단
- 위탁기간 : '20.1.1. ~ '22.12.31.(3년간)
- 사업예산 : 5,649백만원('20년 요구액)

□ 재계약 추진경위

- '16. 5월 :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6.6~8월 : 위탁사업자 공모, 2회 유찰(서울디자인재단 1개사 입찰)
- '16. 8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디자인재단” 위탁기관 선정
- '16.12월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 협약기간 3년('17.1.1.~'19.12.31.)
- '19.2~6월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종합점수 : 81.79점)
- '19. 7월 : 2019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19. 7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기준 통과 (84.8점)

재계약 사유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 전문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 서울디자인재단은 새활용문화 확산과 기반조성에 큰 역할을 수행
 - 개관('17.9월) 이후 3년간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최
- 서울디자인재단은 업사이클 분야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DDP, 패션지원센터 등의 운영 경험을 플라자에 도입하여 시민, 대학, 타 지자체, 연구기관들과 업사이클 네트워크 구축
- 재활용 확산과 새활용 저변 확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그간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재계약 평가결과

구 분	2019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	적격자심의위원회
평 가 일	'19.2~6월	'19.7.22.(월)	'19.7.30.(화)
평가내용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종합평가	시행사무 적정성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평가주체	조직담당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조직담당관	자원순환과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평가결과	81.79점 (600이상 재계약 가능)	적정	84.8점 (700이상 적격인정)

※ 2019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요내용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을 단순한 시설관리가 아닌 디자인 영역을 결합한 형태의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시민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여 기관의 전문성이 충분
- 디자인재단 외 적합한 제3자의 위탁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서울디자인재단 외에 새활용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3자가 부재하고 수탁기관의 역량을 충분히 투자하기 위해서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향후 추진일정

- 2019. 9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2019. 10월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